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63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제221436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참고사항	1
4. 검토의견	2
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 ...	2

I.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제221436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8.

다. 회 부 일 : 2025. 11.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실시계획 고시 후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추가함(안 별표 제2호(97) 신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3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4. 검토의견

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추가

개 정 안
별표 제2호에 (9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개발사업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하기 위하여, 같은 법 별표 제2호(97)을 신설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4조¹⁾에서는 토지등²⁾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은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³⁾.

한편, 현행법 제20조⁴⁾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⁵⁾로 하여금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인정은 특정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결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종합적 검토⁶⁾를 거쳐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별표에서는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116개의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같은 법 별표 제2호에 따른 97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지구 또는 구역 지정, 개발계획승인 등)이 있는 경우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⁷⁾.

개정안은 이와 같이 현행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이하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당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하는 공익성 검토기준은 ① 법령상 전제(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 및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개별법에서 정한 수용재결의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 ② 시행자 의사와 능력(사업을 수행할 정당하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업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구비하였는지), ③ 입법목적 부합성(법령목적, 상위계획·지침, 절차 등에 부합하였는지, 영입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지), ④ 공익 우월성(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지), ⑤ 사업계획의 합리성(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라 볼 수 있는지), ⑥ 수용 필요성(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수용 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⑦ 공익 지속성(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 공익 관리가 가능한지) 등임(한국토지공법학회,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판단 기준 등 연구」(국토교통부 연구용역), 2016. 8.).

7) 보다 상세한 사항은 ‘참고 1’ 참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익의원 대표발의, 제2213531호, 이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⁸⁾을 의미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은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 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주기능을 집적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⁹⁾의 조성 및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취지의 제정 법률안임¹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률안 제15조제3항¹¹⁾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산업시설지구·배후정주지구 개발사업)과 아울러 같은 법률안

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익의원 대표발의, 제221353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제18조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9)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익의원 대표발의, 제221353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자립도시”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주기능을 집적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0) 보다 상세한 사항은 ‘참고 2’ 참조

1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익의원 대표발의, 제2213531호)

제15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 등) ③ 제12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조성할 계획으로 반영한 산업시설지구 및 배후정주지구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야 한다.

제18조¹²⁾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¹³⁾의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표〉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세부 종류

구분	주요 내용
① 산업시설지구	기업이 산업활동을 위해 입주하는 공간
② 배후정주지구	기업 근로자·가족 등의 안정적 정주·교육여건 제공을 위한 지구
③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단지 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위한 대단위 발전설비 지구
④ 분산형전력망지구	전력의 안정적 송전을 위한 전용 송전망 등의 설치 지구

※ 자료: 국토교통부

12)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제2213531호)
제18조(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의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
 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실시계획 승인 시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13)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제221353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그 밖에 재생에너지 전기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6. “분산형전력망지구”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및 그 밖에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치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 제22조제1항¹⁴⁾은 재생에너지집적화 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¹⁵⁾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¹⁶⁾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같은 법 제18조제3항¹⁷⁾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제2213531호)
제2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5)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제2213531호)
제13조(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 해제 등) ① 공동지정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사업시행자(제17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16)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제2213531호)
제22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제2213531호)
제18조(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사업시행자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별표 제2호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¹⁸⁾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의 특례 규정과 현행법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4조의2¹⁸⁾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법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¹⁹⁾.

국토교통부는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및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수용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안」의 ‘토지등의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19) 참고로, 한편, 현행법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에 관하여 같은 법 별표 제2호에 97개의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조문 번호를 (97)에서 (98)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용·사용’의 특례 규정과 현행법 간의 정합성을 위해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다만,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중 ‘산업시설지구’ 또는 ‘배후정주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6쪽 <표> 참고)은 현행법에 따라서도 사업인정이 의제²⁰⁾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표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사업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전체가 아닌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형전력망지구 개발사업”으로 한정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20) 현행 「토지보상법」 별표 제2호 (42)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설명임.

참고 1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유형

자료 : 국토교통부

◆ 토지보상법에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 절차를 통해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용권 부여

*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토지보상법 제20조)

구분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개별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1호 사업인정사업(19개) 제2호 사업인정의제사업(97개)	
대상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사업 - 국방·군사, 철도·도로 등 공공사업, 청사·공장 등 공공용 시설사업, 주택 및 택지·산단 조성사업 등 사업유형 열거 〈사례〉 (1호) 국방대 이전 (2호) 비관리청도로공사 (3호) 공장, 정원, 갯벌, 지역특구 (4호) 우제류복원센터연구소 (5호) 행복주택 등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사업 - 토지보상법 개정('15.12월)을 통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 가능 사업을 토지보상법 별표에 열거 〈사례〉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응급조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사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인정권자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승인권자 (해당 기관장, 시·도지사 등)
인정절차	사업인정 신청(사업시행자) → 공익사업 대상여부 검토(국토부)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국토부) → 사업인정 고시(국토부)	사업인정 신청(사업시행자)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국토부) → 사업인정 고시(국토부)	사업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의견청취 및 중토위 협의(인·허가·승인권자) →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고시(인·허가·승인권자)
개정연혁	수목원 조성 사업 추가('05년),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08년),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14년)	'20년 이후 별표 신설	
		수목원 조성 사업에 정원 조성 사업 추가('24.1)	해양클러스터법('21.1.) 도시재생법, 빈집법('21.7.) 수자원조사법('21.4.)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법('23.10.) 가덕도신공항법('24.9.) TK통합신공항특별법('25.8.) 광역교통법('25.12.)
대상사업 추가요건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개별 법령 내용(사업내용 구체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공공필요 사업에 한해 수용할 수 있도록 제한,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요건 강화 등)
특징	① 토지보상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공공성 및 수용의 필요성 부족시 사업인정 거부(국토부장관) ② 사업인정기간 약 6개월 소요	① 토지보상법 별표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수용의 필요성 부족시 사업인정 거부(국토부장관) ② 사업인정기간 약 6개월 소요	①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승인만으로 토지 수용 가능(사업인정 거부 없이 수용권 남발 가능성 존재) ② 사업인정기간 단축(6개월→1개월)

◆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 내에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 재생e 생산공급을 위한 지구(산업부)와, 산업·정주지구(국토부)를 연계 조성
 - * 시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국토부·산업부 지정 신청 → 위원회(長 국무총리) 심의 등 거쳐 지정
-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도시건축 규제 특례, 세제 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 **(개념)**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공급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주 기능이 집적된 자립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 ① (산업시설지구) 기업이 산업활동을 위해 입주하는 공간
- ② (배후정주지구) 기업 근로자·가족 등의 안정적 정주·교육여건 제공을 위한 지구
- ③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단지 내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위한 대단위 발전설비 지구
- ④ (분산형전력망지구) 전력의 안정적 송전을 위한 전용 송전망 등의 설치 지구

□ **(조성절차)** 4개 지구가 유기적 연계되도록 자립도시 지정 전 기본계획을 통합 수립하고, 지정 이후 지구별 최적화된 방식으로 조성

- (지정 前) 시·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국토부·산업부에 지정 요청 → 재생에너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자립도시 지정
- (지정 後) 산업·정주지구(국토부 주도)는 산업입지법 등 각 사업 개별법령 절차로, 에너지 관련 지구는 특별법에서 절차 신설

□ **(특례)** 우수기업 등 투자 유인을 위한 종합 패키지 지원

-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맞춤형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건축·업종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정주여건 등 강화
 - * (도시) 건폐율·용적률 완화 / (건축) 건축 높이, 마감재 등 완화 / (업종) 업종 네거티브 규제인 '업종특례지구' 활성화 / (주거)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 공공임대 우선공급 등
- 입주기업의 조세, 부담금 감면 등 세제혜택과 함께 보육·교육·의료시설 지원 및 기반·재생에너지 관련 행·재정적 지원